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3:00~16:30

장 소 한국지식재산센터
지하1층 IP Campus + 장영실홀

주 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3:00~16:30

장 소 한국지식재산센터
지하1층 IP Campus + 장영실홀

주 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DOAJ 등재학술지
「지식재산연구」가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3:00~16:30

장 소 한국지식재산센터 지하1층 IP Campus + 장영실홀

주 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문의사항 02-2189-2681

시간	프로그램		
13:00 ~ 13:30 ('30)	학술대회 등록 및 접수		
13:30 ~ 13:45 ('15)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최규완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기념사: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정태현 교수(한양대학교) 	
13:45 ~ 13:50 ('5)	기념 촬영		
13:50 ~ 14:00 ('10)	오픈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지식재산연구」의 성장, 그 20년의 기록 · 이승현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			
14:00 ~ 15:00 ('60)	법학 세션	발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 특허논문을 통해서 본 특허제도 기여와 시사점 · 권태복 변리사(아리특허법률사무소)
		발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 분야 연구의 흐름과 발전 방향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발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로 본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논문 현황 및 과제 · 윤종민 교수(충북대학교)
		발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과 한계 ·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 발제자 종합토론
15:00 ~ 15:10 ('10)	브레이크 타임		
15:10 ~ 16:10 ('60)	경제·경영 세션	발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연구에서 논의된 국가 IP 정책 및 전략과 시사점 · 류태규 선임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영에 관한 이슈와 시사점 · 박종복 교수(경상국립대학교)
		발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시스템의 주된 요소로서 IP와 반독점 제도의 역할조화와 발전방향 · 권영관 선임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데이터 분석의 Next Chapter: AI를 넘어선 인간의 역할 · 윤장혁 교수(건국대학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정태현 교수(한양대학교) · 발제자 종합토론
16:10 ~ 16:30 ('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CONTENTS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

기념사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1
정태현(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3

발제

게재 특허논문을 통해서 본 특허제도 기여와 시사점 권태복(아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7
상표법 분야 연구의 흐름과 발전 방향 김경숙(상명대학교 교수)	11
데이터로 본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논문 현황 및 과제 윤종민(충북대학교 교수)	15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과 한계 김창화(국립한밭대학교 교수)	20
지식재산연구에서 논의된 국가 IP 정책과 전략과 시사점 류태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3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영에 관한 이슈와 시사점 박종복(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8
혁신시스템의 중요 요소로서의 IP와 반독점 시스템 및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 권영관(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	32
IP 데이터 분석의 Next Chapter: AI를 넘어선 인간의 역할 윤장혁(건국대학교 교수)	36

기념사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지식재산연구」 20주년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규완 원장님과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실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지식재산연구」를 창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경제·법률·정책 환경과 학문 여건 및 풍토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지식재산법 분야 학술지는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현 한국지식재산학회)의 「산업재산권」과 한국지적소유권법학회의 「지적소유권법 연구」, 한국저적권위원회의 「계간 저작권」 정도가 있었고, 연구자들은 아쉬운 대로 다른 분야의 일반학술지의 한 모퉁이를 빌려 게재하거나 대학논문집, 정부기관지 성격의 정기간행물(「발명」 등)에 기고하는 응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학술지를 간행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창간 당시 발명진흥회의 일부처럼 설계된 지식재산연구센터에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여건이 조성되기까지는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집필자에게 게재료를 지원하고, 우수논문상을 시상하며, 전국대학생논문공모대회로 장차 집필자의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법학과 경제·경영 등 비법학분야를 아우르게 된 것도 일반 학회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도 판형을 바꾸고, 편집위원을 충원하고, 심지어 AI시대의 저작권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학회의 편집활동과 연구재단 평가에 참여해 왔는데, 좋은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식재산연구」 관계자의 노력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연구」는 앞으로도 매년 향상된 내용으로 상재(上梓)¹⁾되어 연구자와 실무자의 서가에 청공(淸供)²⁾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도 성년이 되면 많은 법적 지위와 함께 의무가 부여되듯이 「지식재산연구」가 한국의 대표적인 우수학술지로 앞으로 행하여야 할 책무도 커졌습니다. 또 뽕나무밭이 푸른바다처럼 변하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제에 도전을 받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책 따위를 출판하기 위하여 인쇄에 부침

2) 맑고 깨끗하게 바침

첫째, 유관 정부 부처와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지식재산분야 학회 통폐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한편 기초연구가 중요한 학술지에 화급한 정책 주제를 주문하는 일이 없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 지식재산법 교육의 위기 문제입니다.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이 매우 저조하고,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이 절대절명인 학생들이 시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³⁾ 2007년 여러 대학이 지식재산 또는 그 관련분야를 특성화로 제시하여 로스쿨 인가를 받았지만 수험기관으로 변한 로스쿨에서 이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매우 한가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법시험 합격자가 거의 없던 대학들조차도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학령인구의 감소로, 법과대학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신설 당시 90여 개가 넘던 법학과는 절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종 학술논문이 부족하다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연구」 기고자를 보아도 교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⁴⁾ 최근 여러 학술지를 보면 교수들의 논문조차 필수요소라고 할 ‘비교법적 연구’가 아예 없거나 간접인용에 그치거나 미흡한 논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교수에 비하여 자료의 충실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집필의 과정이 생략되고 눈에 띄는 자료 몇 개로 짜집기 되는 논문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뜸한 편입니다.

셋째, 「지식재산연구」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각종 대학평가에 직면한 대학들이 국제학술지 게재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좋은 논문들이 학진등재지조차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지만 현실은 ‘욕하면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연구」도 DOAJ 등재 등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학술지가 지식재산 강국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길 꿈꿔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식재산연구」에 기고해 주신 집필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이승현·나은영 두 분 편집간사님의 변함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지식재산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명은 ‘지적’재산권법이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의 분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4) 2004년 창간호의 경우 6명의 집필자 중 교수가 5명

기념사

정태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님/편집위원장님, 김선정 「지식재산연구」 법학분야 편집위원장님, 그리고 「지식재산연구」를 함께 만들어 오신 모든 편집위원 및 연구자 여러분, 오늘 「지식재산연구」의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2018년부터 편집위원으로, 그리고 2023년부터는 경제·경영 분야 편집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지식재산연구」의 성장과 함께해 왔습니다. 2006년 6월 창간 이래 「지식재산연구」는 한국의 지식재산 이슈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산업과 정책을 연결하는 지식 허브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창간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지의 기틀을 다져주신 전임 편집위원장님과 모든 편집위원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념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입니다. 곧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법학과 경제·경영 분야로 나뉘어, 「지식재산연구」의 성과와 기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편집위원 여덟 분께서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연구」의 지나온 길

「지식재산연구」는 200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연 4회 발간 체제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2013년에는 정식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습니다. 2021년 9월호부터는 오픈 액세스 저널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성과를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투명성과 개방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인용지수 상위 30%(Q2)에 해당할 정도로 게재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5월, 「지식재산연구」는 국내 지식재산 분야 학술지로서는 최초로, 세계적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 2만 1천여 종의 학술지 가운데 한국 학술지는 183종뿐이며, 특히 법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DOAJ 등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연구」의 등재는 한국 지식재산 연구의 세계화를 선도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연구」에는 총 5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중 법학 분야 348편, 경제·경영 분야 167편으로 법학과 사회과학이 2대 1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다학제 학술지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AI·머신러닝과 지식재산의 점점 연구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게재 논문 22편 중 6편, 약 27%가 AI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 데이터 분석, 기술이전 등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연구」의 나아갈 길

이제 우리는 다음 2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연구」의 경제·경영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며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식재산연구」의 경제·경영 논문 중 약 72%가 특허 관련 연구입니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연구는 9편, 즉 전체의 5.4%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허 데이터의 가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앞으로는 비(非)특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적·경제적·경영적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식재산연구」가 보다 활발한 학술적·실무적 소통의 포럼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식재산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별 특별호(Special Issue) 발간을 확대하여, 학계와 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연구와 AI 기법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석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AI와 기계학습 방법을 지식재산 데이터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연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연구」가 세계적인 지식재산 학술 포럼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DOAJ 등재를 계기로 영문 논문 투고와 해외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매년 개최하는 학술 대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제 포럼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20년 전 단 한 권으로 시작했던 「지식재산연구」가 이제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읽고 인용하는 대표 학술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연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 지식재산 연구의 중심 학술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등재지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권태복 아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윤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김창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복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권영관 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

윤장혁 건국대학교 교수

게재 특허논문을 통해서 본 특허제도 기여와 시사점

권태복
아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1 특허법 관련 게재 논문의 주제 검토

2006년 제1권 제1호에서부터 2025년 제20권 제3호까지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총 논문 518편 중에서 특허법 및 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과 직접 관련한 논문(특히 통계·경제분석 제외)은 227편으로 약 43.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o	특허법 규정별 주제	편수	관련 법제도 개정, 판결 등
01	특허제도 목적, 특허발명의 실시	13	방법의 사용청약, 수출
02	일반절차(기간, 무효, 연장, 중단)	2	시출원인/발명자의 방식심사
03	발명자(승계), 무권리자, 공동출원	13	시발명자(§33①, 46, 42①)
04	직무발명(대학발명)	6	발진법/공동발명, 연구노트
05	발명의 성립성	16	AI·SW·BM·가상증강·3D·IoT
06	특허요건(공지예외, 선원주의)	14	시모델을 이용한 특허심사
07	특허출원(명세서, 우선권, 단일성)	3	시를 이용한 명세서작성, 연구노트
08	출원공개 및 해외기술유출	3	산기법/첨단법과의 관계
09	국방상 비밀특허	4	비밀명령 형벌(제229조의2, 2025)
10	실체심사(의견, 보정), 거절이유	3	의견제출통지시의 거절이유표기
11	재심사, 분할·변경출원, 분리출원	0	보정, 재심사·분리출원 단독청구
12	복수당사자 대표, 공동소송	0	§11, 139, 취소소송 판결(단독청구)
13	특허권의 효력 및 이전, 회복	18	방법사용청약인지요건(§94②)
14	의약발명, 특허존속기간연장	23	치료방법, 시험연구, 의약연계
15	실시권(통상, 전용)	20	공동발명자, 공유특허권자
16	침해·손해배상(형사, 소진, 문서)	28	징벌제도, 속지주의, 역외적용
17	청구범위 해석	13	문언, 균등침해, 발명전체대비원칙
18	심판(공동), 재심	10	심판청구 건수 저하와 보정문제
19	특허취소	0	제도의 의의와 문제
20	심결취소소송	0	공유특허권자 단독 청구가능(판례)
21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2	권리중복, 저촉 해소방안
22	남북특허(지재)제도비교	2	
23	외국제도	21	
24	PCT, PLT 등	5	PLT 반영 특허법 개정추진
25	나고야의정서, WIPO유전조약	8	출처공개제도의 도입검토
계	227/518편 (43.8%)	227	

- 특허법 관련 논문 227편 중에서 특허침해소송(균등침해, 간접침해, 방법사용의 청약행위와 인지요건 등), 손해배상소송(징벌적 배상), 그 외에도 형사가건, 권리소진,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한 논문이 28편(12.3%)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허법의 중요 부분인 특허요건 관련 논문이 14편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고, 반면 의약발명의 ‘연구 및 시험’에 특허권효력이 미치지 않는 규정 및 연장된 존속기간의 유효갯 규정(14년 초과금지)의 도입에 관한 논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2 특허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점

1) 특허제도의 문제 제기 및 이슈화

- 게재 특허논문들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허법 대부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투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투고 당시 쟁점사항이나 판례 평석 등을 통한 문제점을 이슈화함으로써 특허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환경에서의 SW 및 BM, 가상증강, 3D프린팅, IoT 등이 결합된 첨단기술의 특허보호방안 및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검토한 다수의 논문들은 당시의 SW 발명이나 BM발명 등의 실효적 특허보호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음
- 게재 특허논문에는 미국, 일본, EU 등 외국제도를 많이 소개하고 있고, 특히 외국 특허제도와 우리 특허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게재 당시의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된 것으로 판단됨

2) 특허제도의 개정방안 제언

- 특허논문들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허법 관련 조문 대부분에 걸쳐서 투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특허법상의 쟁점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여 특허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 심사기준 등의 개정방안을 제언하였음
- 투고논문 No.1의 “방법의 사용 청약” 및 “수출”, No.13의 “방법의 사용청약의 인지요건”, No.14의 특허존속기간연장에 있어 14년 한도갯, No.16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에 관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언한 논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논문들은 특허법 개정뿐만 아니라 No.05의 프로그램 물건발명 인정을 위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등과 같이 실제 특허심사 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특허제도의 이용 극대화

- 특허출원과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발명자의 보호방안, 공동발명자 및 공유특허,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발명자 보상제도 등에 관한 논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논문은 특허제도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침해소송, 손해배상, 형벌, 권리소진, 문서제출명령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청구범위해석 및 발명전체대비, 권리남용 등에 관한 논문(No.16,17=41편)을 통해 특허제도 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제도(21편), PCT·PLT(5편), 나고야의정서·WIPO유전조약(8편)을 게재하였고, 이는 외국특허제도의 장단점 및 차이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 게재 특허논문을 통해서 본 앞으로의 시사점

1) 저변확대

- 게재 특허논문의 저자를 보면, 교수분들도 많지만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과정생, 그리고 특허청 재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행하는 지식재산 전문학술지로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본 학술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학술지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실무자 및 변리사, 변호사 등도 특허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현행의 “「지식재산연구」발간규정”이나 “「지식재산연구」투고규정(별표 1, 2, 3)” 이외에 실질적인 논문 작성방법 등을 제시한 「지식재산연구 논문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실무 전문가들도 논문투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특정 주제의 논문투고 유도

- 20년간 게재된 논문을 보면, 발명의 성립성(16편) 및 특허권 효력·이전(18편), 의약발명·특허존속기간연장(23편), 실시권(20편), 침해·손해배상(28편)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 관심 있는 일반 분야에 관한 게재 논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제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도 많이 기재되고 있어서 독자들의 분배로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위 No.11, No.12와 같이 재심사제도나 분리출원제도(보정방안, 공동출원의 단독 절차)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게재 논문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학술지는 지식재산 전문학술지로서 다른 일반 학술지(학회지, 대학발간 등)와 달리 특정 관심 분야(예로, AI모델을 이용한 발명기법·명세서작성·진보성판단, 분리출원, 재심사보정방안 등)를 대상 주제로 선정하여 게재할 수 있는 방안(1년 4회중 1회 정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상표법 분야 연구의 흐름과 발전 방향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주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의 「지식재산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지식재산연구」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풍부한 학문적 성과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식재산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특허, 상표,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반의 영역을 포괄하며,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을 함께 제공해 왔습니다. 이 학술지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물론, 신지식재산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상표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20년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주요 논문들을 분석하고 한국 상표법 연구가 걸어온 발전의 궤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상표법 연구는 제도적 기반의 정립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플랫폼,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연구」가 보여준 학문적 축적은 한국 상표법이 산업의 혁신과 창의적 경제 생태계 속에서 균형 있게 진화하도록 이끈 소중한 지적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2 시대별 연구 동향과 학문적 기여

「지식재산연구」에 지난 20년 동안 게재된 상표 관련 논문은 약 31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한국 상표법 연구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상표법의 기초이론 확립기

초창기 「지식재산연구」의 상표법 관련 논문들은 상표제도의 기본 구조와 헌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상표의 식별력, 공익적 제한, 권리 남용 방지 등 상표법의 근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종갑(2012)의 연구는 상표권의 범위를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상표권의 한계를 공익적 가치와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양대승(2012)은 단체·증명표장 제도를 통해 문화표현물의 보호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상표를 단순한 경제적 표지가 아닌 문화적·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제도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외 배상철(2009)의 연구는 상품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국내 상표심사 실무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논문과 심미량(2011)의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를 연구한 논문은 상표법 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표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법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2. 2010년대 중후반: 국제화와 온라인 환경의 등장에 따른 법적논의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식재산연구」는 기초 연구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상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적 분쟁과 비교법적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글로벌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상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박영규(2014)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와 손영식(2014)의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등은 상표제도의 기본 원리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제도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준석(2014)은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에 걸친 소진원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무역 환경 속 상표권의 경계를 재정립하였으며, 정태호(2014)는 한·일 판례 비교를 통해 상표권 남용의 유형과 한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수미(2018)의 “모조표시 상품의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은 한류 확산과 함께 증가한 모조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신수희(2015)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상표법이 국제사회 속에서 자율성과 조화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후 국제거래, 상표 라이선스, 권리소진 문제에 대한 실무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제화’, ‘공정 이용’, ‘권리 남용 방지’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상표법의 균형적 운영을 모색하는 학문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3. 2020년대: 기술 발전과 상표의 기능적 확장 연구

이 시기의 연구들은 상표의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기술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식별력의 의미에 주목하였습니다. 2020년대 후반 이후 「지식재산연구」는 상표법과 기술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며,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의 융합 속에서 상표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현호 외(2022)의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루며, 디지털 환경 속 상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NFT, 가상자산, 플랫폼 내 브랜드 관리 등 신유형 자산에 관한 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황솔빈 외(2024)의 “상표 검색을 위한 호칭 유사성 판단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한 법적 판단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엄태민(2025)의 “Rise Brewing v. PepsiCo 판결 분석”은 글로벌 브랜드 간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며, 한국 실무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Nam & Yoo(2024)의 연구는 공존동의 제도의 법적 성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브랜드 협약의 합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AI, 데이터, 플랫폼 시대에 상표의 식별력, 공정성, 투명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단순한 경제적 표지(sign)를 넘어 ‘데이터 기반 신뢰의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공지능과 국제거래 등 기술-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상표의 사회적 기능과 법적 조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 ▶ 향후의 과제와 제언

「지식재산연구」의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이 학술지가 한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중심에서 법제도의 발전과 학문적 담론을 선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분야에서의 연구는 법학의 경계를 넘어 경제학, 산업정책, 기술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시도하며 지식재산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상표의 경제적 가치, 브랜드가 지닌 사회적 신뢰, 그리고 기술 환경 속에서의 식별력 문제는 이제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상표법이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혁신 촉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20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역할이 새롭게 재정의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연구」의 미래는 ‘기술-법-사회’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지적 지평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단순한 학문 축적의 장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식재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고의 플랫폼(think platform)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식재산연구」는 한국 지식재산학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지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을 함께 추구하며, 한국 지식재산법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로 본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논문 현황 및 과제

윤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1 머리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가 발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식재산연구」는 2004년 6월 「지식재산논단」으로 첫출발하여 2006년 6월 「지식재산연구」로 제호를 변경하고, 2009년부터는 연 2회에서 4회로 발간을 확대한 이후 2025년 6월 현재 20권 2호까지 모두 76권이 발간-배포되어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학문 발전은 물론, 지식재산에 관한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연구 20년,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2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지식재산연구」誌에 게재된 논문 중 디자인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 및 평가 해보고,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언해 보고자 함

2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논문 게재 현황

- (전체 논문 중 디자인 논문 비중) 2025년 6월 제20권 제2호까지 「지식재산연구」誌에 게재된 논문은 법과 경제 분야를 통틀어 모두 510편이며, 이 가운데 디자인 분야 논문은 총 24건으로 4.71%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게재 현황) 디자인 분야 논문은 그동안 꾸준히 투고되어 게재되었으나,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됨
 - 이것은 2017~2018 기간에는 2016년 12월의 삼성-애플 간 디자인특허침해판결 선고, 2020~2022 기간에는 2020.8.28.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의 전자문서 규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해당 논문의 내용에서도 관련 사실이 나타남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분야 논문 게재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논문		1		1		1	1		1	1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논문	1	1	4	3	1	2	2	3	1			24

* 출처 : 「지식재산연구」誌 각 권호별 게재 논문 중 디자인 분야 논문 전수 조사

- (연구자 소속기관 분포) 디자인 분야의 지속적 연구 기반을 파악해 보기 위해 논문을 투고한 저자(복수저자 포함)의 대표적 소속기관을 산·학·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과 정부기관인 특허청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 분야 교수의 지속적 연구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정책을 관장하고 지식재산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식재산연구」誌의 학술지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 디자인권의 출원·등록 주체 및 디자인의 산업적·생산적 활용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논문 게재 현황이 전무한 것은 의외적인 현상임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논문 저자소속기관 현황〉

구분	대학(교수)	정부기관(특허청)	공공(연구)기관	산업계(기업)	합계
저자	13	8	3	-	24

* 출처 : 「지식재산연구」誌 디자인 분야 논문 저자의 대표적 소속기관 전수 조사

- (논문 주제의 시기별 변화 추이) 디자인 분야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 주제를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나누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각 시기별 논문에 대한 주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것은 그동안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법제도나 정책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산업현장에서의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논의도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디자인에 관한 학술적 연구 활동 또한 정체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것임
 - 디자인 분야 논문의 주제 변화는 「지식재산연구」의 다른 학술지 논문을 종합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경우 일정한 경향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지식재산연구」誌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의미 있는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 관련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디자인 관련 법규가 재정비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관련 논문들이 다수 작성되는 경향을 나타냄

- (논문 저자 특성 분석) 디자인 분야 논문을 게재한 저자 총 24명(공동저자는 대표저자 중심)을 대상으로 논문 빈도 등 연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특정 2인이 전체 논문의 45.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되는 현상을 보임
 - 안○○(H대 교수) 7편(29.1%), 진○○(특허청 사무관) 4편(16.7%)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여 특정인 중심으로 논문이 지속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남

3 디자인 분야 논문 확대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식재산 대표연구기관 역할

- (연구자 저변 확대 및 다양화) 현재 디자인 분야 논문투고는 소수의 연구자(일부 학자 및 특허청 사무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디자인 분야의 교수 등 학자 및 연구자가 소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저변을 확대 및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 대학, 연구기관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연구자 확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후속 연구자 양성 및 교육) 디자인 분야 논문 투고자 중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대학원생 논문 1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자를 양성·교육하는 것도 필요함
 - 석·박사 대학원생, 로스쿨 학생 등 젊은 연구자의 디자인 분야 관심 제고, 참여 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임
 - * IP전문인력양성과 연계한 디자인 교육, 대학원생 대상 디자인논문연구 지원 등
- (산업계의 현장 연구 활성화) 디자인의 권리적 특성상 물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연구」에 산업계의 논문 게재 실적이 없는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업 등 산업계의 현장 연구는 디자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므로 산업계의 현장 실무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 논문이 투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 산·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현장 실무자 대상의 디자인논문연구 공모·지원 등

4 맺음말

- 「지식재산연구」誌에 게재된 디자인 분야의 논문은 특허, 상표 등 다른 지식재산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련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디자인 분야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한 논문들이 「지식재산연구」에 투고 및 게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 「지식재산연구」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 학술지로서 국가 지식재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의 충실한 수행이 요구되는 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좋은 논문들이 게재될 수 있기를 기대함

지식재산연구 디자인 분야 논문 게재현황 (2025.6.30. 제20권 제2호 기준)

- 지식재산논단, 제2권 제2호(2005.12.30.) : 디자인보호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이성정, 경희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1호(2007. 6.30.) :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배상철, 지재연 연구위원)
-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2009. 6.30.) :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출원의 정량적 판단 기준을 위한 디자인 선행조사 방안에 관한 연구(곽상수, 특허정보원-연세대 석사논문)
-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2010. 6.30) :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육소영, 충남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2012.12.30.) : 형태변화가 있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736 판결 및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을 중심으로(이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관)
-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2013. 3.30)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구(진선태, 특허청 심사관)
-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2015. 9.30) :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진선태, 특허청 심사관)
-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2016. 6.30) :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2017. 3.30) : 디자인-기술인용 특허정보를 활용한 애플사의 디자인권 전략 도출(김대중, 류호경, 김지은, 한양대 MOT 박사/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2017. 6.30) :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2017.12.30.) : 등록디자인 도면에서의 파선의 해석 -유럽 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2017.12.30.) :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 요건의 완화 해석을 위한 제언(조경숙, 성균관대 의상학과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2018. 6.30) : 디자인 개념 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제언 -디자인 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하여-(서재권, 문체부 사무관)
-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12.30.) : 식품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심사쟁점에 관한 고찰(김종균, 특허청 사무관)
-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12.30.) :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2019.12.30.) :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2020. 3.30) : 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진선태, 특허청 심사관)
-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2020. 9.30) :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미감성 요건에 관한 고찰(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2021. 3.30)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2021. 6.30) : 투명 식품포장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창작성 —유럽연합일반법원 2020. 3. 12. 선고 T-352/19 판결을 중심으로—(양대승, 목원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2022. 3.30) : 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선하, 양인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사법경찰수사관, 과장)
-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2022. 6.30) : 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안원모, 홍익대 교수)
-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2022. 9.30) : 디자인 도면형식요건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진선태, 특허청 심사관)
-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2호(2023. 6.30) :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보호 —개정 화상디자인 제도의 공백을 감안하여(조영선, 고려대 교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과 한계

김창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학술대회 주제와 같이, 「지식재산연구」에 대한 회고와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식재산연구」 발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지식재산연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부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더니, 전체 약 520편 중 20편 정도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되는 글이었습니다. 주제들은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관련 글들이 있었습니다.

분류	연도	주 제
부 정 경 쟁	2008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성격과 가처분의 성부에 대한 연구
	2011	A Study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 Comparative Perspectives in Licensing Agreements
	201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201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2013	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2013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2014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2017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 고찰 - 중국과 한국의 보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2018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2018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가능성 원리에 관한 고찰
	2018	제품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변경 전 ‘차목’)의 적용
	202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 소위 ‘눈알가방’ 사건과 관련하여
	2021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
	2023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규제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와 청구주체
2024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분류	연도	주제
영업비밀	2014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 원인: 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7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2019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간한정(limited) 또는 기간무한정(perpetual) 금지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824 판결
	2025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연구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글들은 부정경쟁의 일반 이론과 성과모방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형태모방행위,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등의 구체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문제를 논했으며,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된 글들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분쟁과 국제소송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른 지식재산 유형 관련 글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글의 주제도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표법의 일반법적 위치에 있어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부분 역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기존에는 그리 크지 않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중 부정경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6개의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정하면서 출발했던 입법 초기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13개의 유형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제도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을 추가하였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보호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호까지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지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정경쟁 관련 규정들이 훨씬 활발하게 적용될 것이고, 그만큼 중요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 관련 글들의 자동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부분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술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매우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의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벌금액 등의 처벌을 강화한 것같이, 우리 영업비밀 관련 규정들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완화하였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배 손해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벌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영업비밀보호를 훨씬 강화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시킬 것이며, 영업비밀 관련해 많은 이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역할의 증가만큼이나 한계도 가지고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우선, 부정경쟁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의 보충적 성격으로 인해 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 둘째, 부정경쟁 행위 중 일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호의 대상을 개인의 성과까지 보호하게 됨으로써, 기존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기존 보호의 원칙에서 제외되었던 '이마의 땀' 이론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논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영업비밀보호의 한계점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의존은 혁신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리하여 유용한 지식의 보급이라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공정을 비밀로 하는 문제는 미국에서 특허 시스템을 채택한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강화는 다른 지식재산 유형의 채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우리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약화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의 행위 규범적 성격과 배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현대의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의 변화에 따른 적용 확대와 그 적용의 한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식재산연구」 학술지에 많이 게재되어 부정경쟁방지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식재산연구」 학술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연구에서 논의된 국가 IP 정책과 전략과 시사점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우리 지식재산연구는 국가가 법에 따라 설립한 지식재산 분야 유일의 연구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이다. 본 학술지는 중요한 경제·사회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많은 연구자와 정책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후학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설립한 연구소이므로 특히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그 결과가 국가의 정책의사결정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그간 우리 지식재산연구가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2 그 간의 발표 논문과 기여도 분석 :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 기여의 관점

먼저 분석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어떤 논문을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논문인가를 선별하여야 한다. 해당 범주의 설정이 분석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특정한 법령이나 제도가 아닌 다양한 법령과 제도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과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가지는 정책적 쟁점, 예를 들어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 유망한 지식재산의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지식재산 성과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재산연구는 크게 법령과 제도 분야와 이외의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제도 분야는 그 자체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이거나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 분야의 논문은 별도의 분석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대상으로 구분되어 논의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선별기준으로,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보다는 기업경영에 보다 관련도 높거나, 분석 방법론에 치중한 논문에 해당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기여한 논문을 선별한 다음으로 해당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의 결과가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나 정책의 설계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간접적이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는 현재 정책적 쟁점이 되는 분야이거나 정책적 쟁점과 세부적 결정요인 등에 해당 되는 것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참고가 되거나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선 상에서 논의 및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에 기여한 논문을 선별함에 있어서 기여한 논문을 직접 선별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분야를 배제한 나머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은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국가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논문을 기여 논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분석의 목적과 향후 지식재산연구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별절차는 먼저 논문의 제목을 기준으로 제외대상 논문과 분석대상 논문으로 구분하였다. 논문 제목으로만 제외대상 여부의 결정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초록 또는 전체 논문을 간략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하였다. 또한 전체논문에서 제외대상 논문을 배제한 나머지를 분석대상 논문으로 간주하였고, 분석대상 논문의 경우 먼저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초록의 검토만으로 불분명한 경우는 전체 논문을 간단히 검토하여 직접적 기여 논문과 간접적 기여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상기에서 간접적 기여 논문을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나 정책의 설계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간접적이거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해당 논문이 어느 시점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지 사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직접적 기여 논문을 제외한 모두를 간접적 기여 논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별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총 518편의 논문¹⁾을 대상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제외대상 논문은 518건 중 361건, 분석대상 논문 157건 중 국가 지식재산 전략 또는 정책에 직접 기여 논문은 75건, 간접 기여 논문은 82건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1>에 연도별 전체 논문, 직접 기여 논문, 간접 기여 논문 등의 구분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1> 연도별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분야 기여논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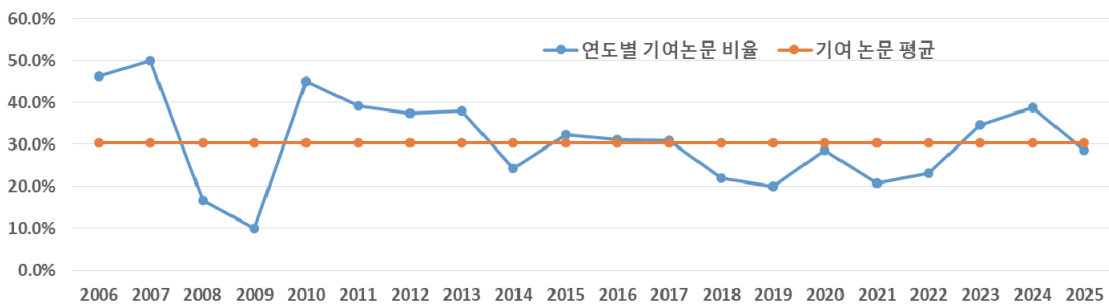
	기여 논문 비율	직접 기여 논문 비율	간접 기여 논문 비율
2006	46.2%	7.7%	38.5%
2007	50.0%	21.4%	28.6%
2008	16.7%	8.3%	8.3%
2009	10.0%	5.0%	5.0%
2010	45.0%	30.0%	15.0%
2011	39.3%	21.4%	17.9%
2012	37.5%	16.7%	20.8%
2013	37.9%	13.8%	24.1%
2014	24.2%	9.1%	15.2%
2015	32.4%	14.7%	17.6%
2016	31.3%	15.6%	15.6%

1)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2025년은 9월말에 발간된 제3호까지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논문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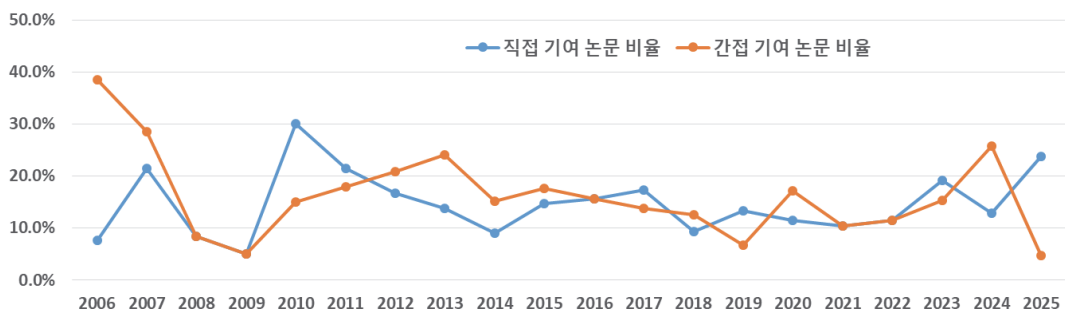
	기여 논문 비율	직접 기여 논문 비율	간접 기여 논문 비율
2017	31.0%	17.2%	13.8%
2018	21.9%	9.4%	12.5%
2019	20.0%	13.3%	6.7%
2020	28.6%	11.4%	17.1%
2021	20.7%	10.3%	10.3%
2022	23.1%	11.5%	11.5%
2023	34.6%	19.2%	15.4%
2024	38.7%	12.9%	25.8%
2025	28.6%	23.8%	4.8%
평균	30.3%	14.5%	15.8%

상기 표의 구분을 기초로 연도별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에 직접 기여 논문과 간접 기여 논문 및 기여 논문의 전체 논문 수 대비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도별 전체 논문 수 대비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기여 논문 비율



<그림 2> 연도별 전체 논문 수 대비 직접기여 논문 비율 및 간접기여 논문 비율



상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지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와 주제에 따른 변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에 기여하는 논문의 수가 증가하다 점

차적으로 안정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논문의 비율도 최근들어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의 변동을 보이며 안정되고 있다.

지식재산연구는 지난 20년간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기여하는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체계에 따른 창출, 보호, 활용, 기반의 분야와 정책에 필요한 기초분석으로 구분하여 볼 때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분야 기여논문 현황

구분	기반	기초분석	창출	보호	활용	합
기여논문	40	48	10	19	40	157
직접 기여	7	27	8	11	22	75
간접 기여	33	21	2	8	18	82

특히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영향과 성과분석 등 지식재산 기반 관련 논문과 활용 관련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기반분야의 논문은 직접적 기여보다는 간접적 기여를 한 논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호와 창출 분야의 기여 논문들은 관련 논문 수는 적어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논문의 수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창출 분야는 국가연구개발제도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관련 다양한 규정 하에서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명확히 정책에 기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시사점

지식재산연구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지이므로 이에 기여하는 논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특허정보의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는 논문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에 기여하는 논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의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연구가 정부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술적 연구와 함께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논문의 비율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지식재산 일반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논문으로 투고하는 연구자와 그 연구 분야가 고착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정책은 매우 장기적인 전략이나 거대 담론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에서부터 매우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단기적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다. 정책은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실의 쟁점들에 대해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반면 논문은 특정하고 세밀한 연구주제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나 이론으로부터 연구자의 주장이나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정치하게 다룬 글이므로, 정책적 문제해결의 과정이나 결과를 다루거나, 이에 기여하는 논문은 학술적 논문과는 그 특성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책을 다룬 논문에 대한 투고 유인체계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의 관점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영에 관한 이슈와 시사점

박종복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는 왜 필요한가?

혁신형 중소기업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해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러한 혁신과정은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로 이루어지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과연,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구)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한 이후 25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경쟁력을 '산업 발전' 측면을 중심으로 진단한 국내 연구보고서¹⁾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이 산업발전에 종합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는 제도·인프라 구축과 초기 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인정하되, 정책 파급의 깊이와 속도는 제한적이었다고 해석된다.

더불어, 향후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의 산업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비중을 대학/연구소에서 중소기업발(發) 사업화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진단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그간의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이 '죽음의 계곡' 단계에 편중되어 왔고, 산업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다윈의 바다' 단계는 정부지원의 영역에서 대체로 배제가 되어왔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²⁾. '다윈의 바다' 단계는 기술적 리스크가 낮더라도 시장 리스크는 급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술사업화 활동은 시장실패 영역이고 정책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Tassey, 1997)³⁾.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발(發) 기술사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발(發) 기술사업화 또는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로 정의될 수 있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

1) 박종복, 손수정, 노정숙 (2023),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정책의 고도화 방안: 진단과 처방」, 단기정책연구결과보고서, 한국공학한림원.

2) '죽음의 계곡'은 연구개발 이후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시드(seed)로 전환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의미하고, '다윈의 바다'는 사업화 시드로 전환된 후 시장진입 및 성장을 위한 마케팅 등 시장 중심의 사업화 전략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한계 상황을 의미한다.

3) Tassey, G. (1997), The Economics of R&D Policy, Quorum Books.

사업화는 중소기업이 원칙적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의미하나,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기술을 대학, 공공연구소, 타 기업 등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⁴⁾.

2 『지식재산연구』에서의 지난 25년간 학술연구 동향: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영⁵⁾

지난 25년간 『지식재산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연구가 41여편의 논문게재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연구로서 박규호(2007; 2011; 2012; 2013)의 연구는 4회의 연속적인 연구를 통해 친-특허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기술혁신과정이 개방형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하였고,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전략적 특허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기술사용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라이선싱 결정요인을 개별 특허 수준에서 분석하여 기업-공공연구소의 협력방식이 라이선싱 성과 창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한국기술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전략에서 특허 활용과 기술혁신 협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은 전유성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력 중에서 수평적 협력, 전문기관협력 및 계열사 협력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성태경(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이테크마케팅과 차별화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 차원에서 기술마케팅 전략 및 과정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권영관·박종복(2016)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 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산업별 기술사업화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손수정(2011)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국내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프리미엄 개념에서 접근하고,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허프리미엄의 경우, 국내 기업은 기계, 전자 등 IT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은 BT 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일반화된 특허 전략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또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로서 임근영 외(2006)과 정연덕(2010)은 특허신탁 이용방안과 특허신탁 활성화방안을 다루었다. 특히, 정연덕(2010)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제와 특허신탁법제의 차이점과 지적재산권 신탁제도와 특허 신탁의 관계 및 차이점을 검토하고, 국외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4)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발 기술사업화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발’이라는 용어는 사업화 대상기술의 주된 원천과 추진 주체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책용어’이다.

5)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인용문헌의 서지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특허 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료 제도와 관련하여 김해도(2010), 이석래·정태현(2023) 및 이재훈(202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석래·정태현(2023)는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사용하여 40여 년간 유지되며 발전해 온 정부기술료 제도를 분석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제도의 주무 관료가 제도의 발전과 변화의 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간접금융 형태로 지원하는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노민선(2012)과 박성화·류태규(2017)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박성화·류태규(2017)의 연구에서는 Patent Box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Patent Box 제도 도입 시의 쟁점 이슈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P제품매출형 Patent Box 모델과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기술사업화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서경·권영관(2013)과 이성상(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을 도입한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발(發) 기술사업화와의 경계가 모호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주도로 대학 또는 공공연구소의 보유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민재용·김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도입동기를 기술력확보와 기술의 권리확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기술도입동기와 무관하게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성과(=기술료수입/연구비지출)는 기업의 사업화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는 후속연구의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권태혁·서일원(2018)의 연구에서는 수요기업의 공공기술 도입 후의 만족도와 기업의 연구역량 및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기술도입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집중도는 보완적 관계를, 전담 비율은 대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공공기술 도입 목적이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기업의 내재적 역량 향상을 위해 향후 보다 세분화된 사업화정책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연구를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소위 Bayh-Dole 체제로 일컬어지는 대학, 공공연구소 주도의 기술사업화가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의 주류를 형성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Bayh-Dole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 산업의 발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연구가 후속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향후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 시사점

첫째,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투자방향 및 거버넌스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연구 및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모니터링하는 범부처 차원의 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윈의 바다’ 영역에서 범부처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데에 강점이 있으며, 전국적인 현장접점을 보유하므로 일원화된 창구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영역은 양산 기술 개발, 시장테스트 지원 등 ‘다윈의 바다’ 영역 위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주기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가 기초·원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죽음의 계곡’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게 시장검증(proof-of-market) 지원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주도 기술사업화의 성공기준으로서 매출액 발생여부는 비교적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발생은 어느 규모로 일어나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향후에는 매출액의 적정 임계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업종별로 적정 임계규모에 근사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도출해 보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끝으로,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도 기술사업화에 관한 조사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주도 기술사업화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박종복 외(2013)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특성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였으나, 그 이후에 후속연구 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⁶⁾.

6) 박종복·조윤애·권영관(2013), “한국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8(2), 1-29.

혁신시스템의 중요 요소로서의 IP와 반독점 시스템 및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¹⁾

권영관
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의식

혁신시스템(System of Innovation)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의 선순환을 전제로 합니다. 특허와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IPR)은 리스크가 따르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보상(Reward)을 제공하는 주된 인센티브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반독점(competition policy 또는 antitrust) 제도는 독점 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진입과 상호운용을 촉진하는 개방의 촉매입니다.²⁾ 두 시스템과 제도는 상충하는 면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혁신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필수특허(SEP)·FRAND, 플랫폼 사전규제(EU의 DMA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 문제(EU Data법), 인공지능(AI) 저작권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고, 이는 “지식의 배타성”과 “경쟁의 개방성”을 동시에 재고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³⁾

2 IP의 역할

IP는 혁신의 사유화를 허용하되 기간과 범위를 제한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경제로의 진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IP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학습·산출물의 저작권성 문제입니다. 대규모 말뭉치에 의존하는 생성형 AI는 학습단계의 합법성(공정이용 여부 등)과 산출물의 저작물성(인간 기여 요건)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 미국의 <New York Times v. OpenAI/Microsoft

1) 본 주제 발제문의 내용은 순전히 발제자 개인적인 견해일 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 거래조정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본 발제 내용과 관련해 문의 혹은 조인 사항은 발제자 이메일(kykwan7@naver.com)로 contact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밖에도 반독점 제도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 기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European Commission. (2025, April 23). Commission finds Apple and Meta in breach of the Digital Markets Act. Retrieved from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25, September 12). The Data Act is applicable from 12 September 2025. Retrieved from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

사건)을 보면, 원고의 핵심 청구가 본안 심리로 진입하며 언론 저작물의 무단학습·재현가능성에 관한 기준 정립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⁴⁾ 금년 6월에는 데이터·로그 보존명령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며 저작권·개인정보·증거보전의 경계가 침체화되었습니다.⁵⁾

둘째, 표준과 특허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상호운용을 위해 도입된 표준필수특허는 FRAND 라이선싱을 전제로 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기준, 포트폴리오 묶음, 관할권의 경합이 뒤얽히며 거래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금년에 EU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SEP 규제(안) 철회를 공식화하며 사법적 가이드라인과 회원국 법원의 판례에 관련 사법적 규제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회귀했습니다.⁶⁾ 다른 한편으로는 2024년 영국에서는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InterDigital v. Lenovo 사건> 항소심에서도 비교사례 분석의 신뢰성, 소급판매분 포함, 이자 지급 등 FRAND 산정 원칙을 보다 정교화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법기관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⁷⁾

셋째, 데이터를 둘러싼 새로운 IP 시스템을 통한 보호 문제입니다. EU에서는『데이터법(Data Act)』을 통해 금년부터 연결기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제3자 접근권을 보장하고, 클라우드 전환·상호운용을 위한 계약·기술적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배타적 지배를 완화하면서도 영업비밀·보안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데이터 시대의 Quasi-IP 질서”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습니다.⁸⁾

3 반독점의 역할: 개방·상호운용과 시장규율⁹⁾

특히 디지털·플랫폼 경제에서 반독점 시스템의 갖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래 들어 반독점의 초점은 가격을 넘어 생태계 통제 및 데이터의 경합성으로 이동했습니다. EU는『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금지, 제3자 앱마켓·결제 허용, 상호운용성을 핵심 의무로 규제하고, 2025년 4월 Apple과 Meta에 대해 의무 미준수 결정을 내렸습니다.¹⁰⁾ 이는 개별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의 집행을 넘어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기업은 보안·프라이버시·품질저하 리스크를 제기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가 갖는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pple은 EU DMA가 EU 사용자 기능 출시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논쟁을 확산했으며,¹¹⁾ 2024년에는 음악 스

4) Reuters. (2025, April 4). Judge explains order for New York Times in OpenAI copyright case

5) Reuters. (2025, June 6). OpenAI appeals data preservation order in NYT copyright case.

6) European Commission. (2025, February 11). European Commission withdraws proposals for a Regulation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7) Court of Appeal (England & Wales). (2024, July 12). InterDigital v. Lenovo [EWCA Civ 743]; Blackstone Chambers. (2024). Note on InterDigital v. Lenovo.

8) Skadden. (2025, June 20). EU Data Act: Three months to go before new rules.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영관(2024).『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경쟁친화적 민관협력 규제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0) European Commission. (2025, April 23). Commission finds Apple and Meta in breach of the Digital Markets Act.

11) Apple. (2025, September). The DMA's impacts on EU users.

트리밍 앱 유통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으로 1.8 Billion 유로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¹²⁾

이런 흐름은 비단 EU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2024년 제정, 2025년 3월 지정 고시를 통해『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시행하며 대체 앱마켓·결제·브라우저엔진 허용 등 EU DMA와 유사한 사전규제를 도입했습니다.¹³⁾ 이는 아시아 지역의 플랫폼 개방 표준화를 가속하고, 브라우저 엔진·결제 인터페이스 앱 배포의 상호운용 경쟁을 촉진과 관련한 문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¹⁴⁾

4 IP와 반독점: 긴장과 조화

현대적 관점에서 IP와 반독점은 “혁신의 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두 축과 같습니다. 비록 두 시스템과 제도가 상충이 되는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정교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중요하게 부각된 몇 가지 쟁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통제권 vs 상호운용 강제

플랫폼은 IP·영업비밀·보안 논리를 들어 폐쇄성을 정당화하는 반면, 규제당국은 안티스티어링, API 공개, 기능 상호운용을 통해 혁신의 다원성을 지향해 대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EU 규제당국의 Apple이나 Meta에 대해 DMA 의무 미준수 결정과 Apple의 관련 사건들을 보면, 규제당국은 플랫폼의 보안성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술적 안전조치(감사·시험·로그·차등 의무)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AI 저작권 질서 vs 학습확산의 자유

AI 학습 합법성·산출물 저작물성·투명성(데이터·로그 보존)을 둘러싸고 저작권·개인정보보호·증거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NYTv. OpenAI/Microsoft 사건>의 본안 심리가 진행 및 보존명령과 관련한 다툼은 집단 라이선스·오픈아웃·보상 메커니즘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규제와 공적인 규제의 정합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표준경쟁: FRAND의 예측가능성

최근 EU SEP 규제(안) 철회 이후, 사법 심사와 대안적인 전문 중재기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InterDigital v. Lenovo 사건> 항소심에서 비교사례 방식의 검증 가능성, 판매량 소급, 이자 부과,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의 공정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홀드아웃(hold-out)과 홀드업(hold-up)을 동시에 방지하려면 분쟁비용을 줄이고 속도 있는 FRAND 기술료 산정을 가능케 하는 절차적인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12) European Commission. (2024, March 4). Commission fines Apple over €1.8 billion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13) 앞의 권영관(2024).

14) Japan Fair Trade Commission(2025, March 31). Designation of specified software operator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5 결론

혁신을 위한 투자와 지식축적의 엔진으로서의 IP 시스템과 경쟁촉진과 공정·개방의 촉매로서의 반독점 시스템은 상충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동일성을 갖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IP 및 반독점 시스템 및 제도의 한계점이 분명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쪽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IP와 반독점 양쪽의 균형 잡힌 시선의 협력연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IP 데이터 분석의 Next Chapter: AI를 넘어선 인간의 역할

윤장혁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1 서론: MI의 도래와 H.I.로의 전환

2025년은 지식재산연구 저널 창간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 20년은 지식재산(IP) 연구가 주제적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IP 연구가 제도나 경험적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 분석과 인공지능(AI) 기법이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데이터 및 방법론" 연구가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등장은 학문 전반에 걸쳐 머신 인텔리전스(MI: Machine Intelligence) 시대를 열었다. MI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자동화하고, 텍스트 마이닝·예측 모델링·기술 유사도 분석 등 다양한 IP 데이터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분석의 효율과 속도는 혁명적으로 높아졌으며, IP 연구는 방대한 데이터 공간을 탐색하는 과학적 탐구로 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AI가 복잡한 패턴을 탐지하고 높은 정확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결과의 의미와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다시 인간 지능(HI: Human Intelligence)의 역할로 되돌아온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데이터가 함의하는 가치와 목적을 해석하지는 못한다. 분석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의미 부여"라는 인간 고유의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IP 데이터 분석의 다음 장(Next Chapter)은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지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H.I.: Hybrid Intelligence)로의 전환이다. MI의 계산 능력이 HI의 통찰과 판단에 의해 통합되고 제어될 때, 분석은 비로소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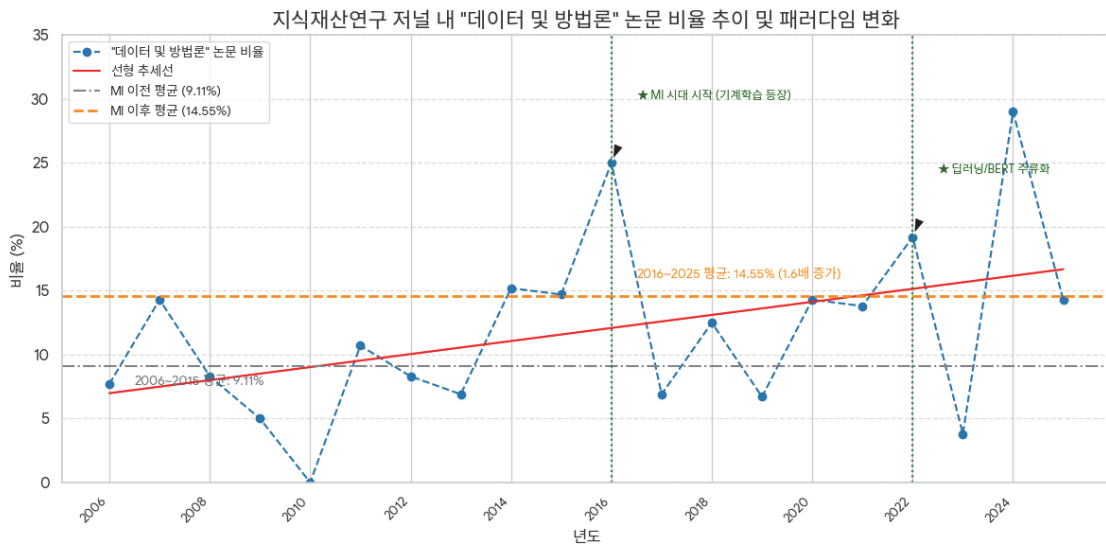
2 본론 1: MI 혁신의 정점과 전환의 문턱

지식재산연구의 연구 주제의 변화

지식재산연구 저널의 지난 20년간 논문 제목을 살펴보면, MI 시대의 부상이 수치로 뚜렷이 드러난다. <표 1>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논문 중 "데이터 및 방법론" 논문은 평균 8% 수준(연평균 약 2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AI 기술이 학문적으로 본격 확산되면서 해당 분야 논문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8편(25.0%)으

로 급등하며 전환점을 맞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전체 31편 중 9편으로 29.0%, 즉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3편(14.3%)으로 다소 조정되었지만, 장기 추세는 명확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증가세를 연평균복합성장률(CAGR)로 계산하면 2006년 1편에서 2024년 9편으로 18년간 약 14.6%의 복합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라, "데이터 및 방법론" 연구가 지식재산학계 내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증거다.

〈표 1〉 지식재산연구의 “데이터 및 방법론” 논문 추이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식재산 연구는 데이터 기반 접근이 제한적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MI 기술의 도입은 연구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분석 단위가 개별 사례에서 데이터 네트워크로, 탐구 범위가 정성적 해석에서 계량적 모델링으로 확장되었다. MI는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했으며, 연구자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

이러한 전환은 연구 키워드의 흐름이 HI → MI 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2010년 이전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통계", "계량", "모형" 등 기초적 분석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년을 전후해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이 확산되며 데이터의 양 (Volume)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2016년에는 "기계학습", "AI 모델", "분류", "예측" 이 급증하면서 MI 중심의 분석 시대가 열렸다. 이후 2018년부터 "NLP", "텍스트 분석", "딥러닝" 등의 용어가 다수 등장했고, 2022년 이후에는 "BERT", "Transformer", "신경망"과 같은 고도화된 모델 명칭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MI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한계를 드러냈다. MI는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한다. 즉, MI는 패턴(what)은 탐지하지만, 의미(why)는 해석하지 못한다. 데이터 외부의 정책적 맥락, 사회적 가치,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다. 또한 MI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모델은

결과를 산출하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결국 MI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목적과 해석의 부재라는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다.

3 본론 2: HI 주도의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H.I.)

IP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 전환—분석자에서 전략적 설계자로

H.I. 시대의 첫 번째 전환점은 IP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 변화이다. MI가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를 담당한다면, HI는 분석의 목표와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분석가는 단순히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지식의 설계자(Architect of Purpose)로 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할 때 MI는 기술 키워드의 출현 빈도나 네트워크 구조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술 조합이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그 질문에 맞게 데이터를 재구조화하는 일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 정의를 통해서만 MI의 계산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MI의 결과를 시장·정책·기술의 통찰과 결합해 IP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HI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MI가 "자율주행센서"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했다고 예측하더라도, 이를 "산업구조 변화와 규제 완화 속에서 어떤 기술이 핵심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인가"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다. 결국 HI는 MI의 결과를 단순한 데이터에서 전략적 내러티브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IP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자의 탐색 방향—협력적 해석과 목적지향형 방법론

H.I. 시대의 학문적 과제는 MI의 기술적 정교화를 넘어, 인간과 기계의 협력 구조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데이터 입력 → 모델 실행 → 결과 해석'의 선형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가설 설정 → 모델 탐색 → 해석 보정 → 재학습'의 순환형 탐구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H.I. 협력 프로토콜(Collaborative Protocol)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단순한 검증자가 아니라, 모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공동 탐구자(co-explorer)로서 기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에서 MI는 기술 간 연결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단순한 인용인지, 실제 기술 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을 의미하는지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MI의 결과를 산업·정책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데이터의 패턴에 목적을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의 궁극적 목표는 "패턴에서 목적(Pattern → Purpose)"으로의 전환이다. MI가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준다면, HI는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데이터 분석이 단순한 예측 행위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지식 창조 행위로 발전할 때, 비로소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의 가치가 완성된다.

4 결론: IP 데이터 분석의 Next Chapter, 인간이 완성하는 지능의 진화

지난 20년간의 IP 데이터 분석사는 기술의 발전이자, 인간의 역할 재정립의 역사였다. MI는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무엇을 분석하고 왜 분석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AI는 사실을 탐지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적 방향으로 연결하는 통찰은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IP 데이터 분석의 Next Chapter 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AI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확장하는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H.I.)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MI의 계산력과 HI의 해석력이 결합될 때,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략적 지식과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는 지능의 기반이 된다.

지식재산연구 저널은 향후에도 이 Next Chapter 의 여정을 선도해야 한다. 데이터 중심의 분석 방법론 위에 인간의 통찰과 비판적 사고를 결합함으로써, IP 연구의 패러다임은 기술적 효율의 차원을 넘어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갖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AI가 패턴을 찾아내는 시대를 지나, 이제 인간이 그 패턴의 의미와 목적을 설계하는 지능의 진화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발간 20주년 학술대회